의안번호	2201697
의 뢰 인	박희승의원
회 답 일	2024.08.06.
추계번호	24C201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조문 삭제>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함(제10항)	의무규정
		○ <조문 신설>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1]의 규정을 준용함. 다만,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제10항) - 국내 체류 외국인 보험급여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안 제109조)

○ 현행법 제109조제10항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2]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해당 조문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3]로 결정됨에 따라 그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1)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③ 공단은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는 총체납횟수에서 제외하며, 보험료의 체납기간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법 제109조제2항에 따른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을 말함

조문을 삭제하고 급여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 내국인의 경우, 동법 제5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4]에서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6회 미만일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 등 총 체납횟수 기준, 사전통지, 예외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요건을 완화할 경우, 보험급여 수요가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출[5]이 증가하여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건강보험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6].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7],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추가지출 금액의 20%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8][9]

---

3)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10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동 조항이 이유 없이 외국인 청구인들을 내국인 등과 달리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음. 또한 "보험급여제한 조항은 아무런 예외 없이 보험급여를 제한해 경제적 사유로 평균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불측의 질병·사고 발생 시 건강에 대한 치명적 위험성에 더해 가족 전체의 생계가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함.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심판대상조항을 개정하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①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란 6회를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소득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득을 말하고, 재산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그 세대의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100만원 미만일 것. 다만, 가입자가 미성년자,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이 각각 공단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 법 제53조제3항제2호의 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소득 및 재산의 확인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5)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건강보험재정은 국가재정이 아님.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네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급여비가 증가할 경우 국가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6)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7)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8)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제한 요건 완화에 따라 추가로 보험급여를 수급하게 될 국내체류 외국인 체납자의 수와 그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개정안은 구체적인 보험급여 제한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을 가정하더라도 현시점에 발생하지 않은 의료수요에 대한 객관적인 가정을 하기 어려움[10)]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체납 외국인의 경우 출국 시 체납 보험금 징수가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으며, 법률 제1988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2024.4.3. 시행) 제109조제4항제3호[11)]에 따라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보험료를 체납하는 방식으로 제도 회피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험급여 제한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만 2,000세대이며, 체납액은 259억 7,600만원 수준임

[표 1] 지역 건강보험료 외국인 체납 현황

(단위: 천세대, 백만원)

구분	대상	체납액
2023	22	25,976
2022	20	23,407
2021	22	26,427

주: 6개월 이상 체납세대 중 자격유지. 누적(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국민건강증진법」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

9) 2021~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1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수요는 의료수요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3)에 따르면 외국인 임의가입제도 하에서의 평균 진료비가 의무가입제도 하에서의 평균 진료비 보다 높아 실질적인 의료수요가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제도에 편입된다고 볼 수 있음. 마찬가지로, 현 제도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험료 체납 즉시 보험급여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체납가입자의 의료수요는 체납하지 않은 가입자의 평균보다 낮을 수 있음

11)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신청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와의 관계가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 제5조제3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에 해당할 것
3. 국내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할 것. 다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